#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을 관련 법령의 내용과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보 호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제 절차 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 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고자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을 관련 법령의 내용과 맞게 정비
- 나. 징수유예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다.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 납

#### 세자보호관 사전 의견을 제출토록 신설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2. 9. 30. ~ 10.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위임된"을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을 "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을 "각 호의 요건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서 규정하는"을 "제2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하결정"을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을 "법, 「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를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탈세제보"를 "탈세 제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을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을 "법, 「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을 "이모사소송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민사소송법」등"을 "「민사소송법」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정하여"를 "한하여"로 한다.

제18조 중 "고충민원신청"을 "고충민원 신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조사 기간 연장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기간을"을 "조사 기간을"로, "조사기간 종료 1일(공휴일·토요일 제외,"를 "조사 기간 종료 1일(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같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사기간 연장"을 "조사 기간 연장"으로, "조사기간 종료"를 "조사 기간 종료"를 "조사 기간 종료"를 "조사 기간 종료"를 "조사 기간 종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을 "(조사 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 기간"으로사기간"을 "(조사 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 기간"으로

로 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2호 중 "연장신청"을 각각 "기간 연장신청"으로 한다.

제22조 중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한다)전"을 "조사 개시 3일(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전"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2호 중 "경우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7일"을 "요청을 받는 날부터 7일"로,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법령개정"을 "법령 개정"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연장신청"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면신청"을 "감면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4.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제시

제34조의 제목 "(기한의 연장신청)"을 "(기한의 연장 신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기한의 연장결정)"을 "(기한의 연장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청인"을 "신청이"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가산세의 감면 신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가산세의 감면결정)"을 "(가산세의 감면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부서"를 "세무부서의"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각각 "체납처분 유예"로 한다.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이의신청 사전 의견제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이의신청 청 구건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지방세기</u>	제1조(목적) <u>조례는 「지방세</u>
본법」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
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b>.</b>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제2조(정의) ①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세자보호관" <u>이란「지방세</u>	4이란 「지방세
<u>기본법」제77조제2항</u> 에 따라	<u>기본법」 제77조제2항</u>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2
이 <u>조례에</u> 특별히 정하는 경우	<u>조례에서</u>
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①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 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 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2. (생 략)
- ② (생 략)
-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 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 • 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 | 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 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 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 1. · 2. (생 략)
  - 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u>각</u>	호의	요건을	: 갖춘
제2호의	<u> </u>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지방공무워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하여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 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 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1. 2. (현행과 같음)
- 3.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 3.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② (생략)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
니한 <u>각하결정</u>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 1. (생략)
- 2. <u>법,「감사원법」,「행정소송</u> <u>법」등</u>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 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 <u>자체감사결과</u> 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

제8 -	조(안건 심의 등) ①
	<u>"지방세심의위</u>
<u></u>	<u>일회"</u> ② (현행과 같음) 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_	 
_	
1	. (현행과 같음) . <u>법, 「감사원법」, 「행정소</u>
	<u>송법」 등</u>
3	 <u>자체감사 결과</u> <u>에 따른 시정 지시</u>
1	  . 탈세 제보

소・고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법, 「감사원법」, 「행</u>정소 6. 법,「감사원법」,「행정소송 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 송법 | 등----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 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 7. 「민사소송법」 등 ----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 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 ----- 아니한다 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 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 인 · 위원회 심의 ·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의견조회 ·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 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 한하여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

어 민원인에게 <u>고충민원신청</u> 전 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 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 게 조사기간 종료 1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 또는 그의 납세관리 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1일 전 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 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 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 에서 제외한다.
-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 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1. 세무조사 <u>연장신청</u>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세무조사 <u>연장신청</u>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u>고중민원 신청</u>
<u>,</u>
제20조(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
סול או דו
조사 기간
<u>을</u>
조사 기간 종료 1일(공휴일
· 토요일은 제외한다 <u>같</u>
<u>T</u>
②
조사 기간 연장
조사 기간 종료
,
(조사 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 기간
레이크 (서기 기기체 메리 거기)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1 <u>기간 연장신청</u>
2 <u>기간 연장신청</u>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 지자 또는 그의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한다)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생 략)

-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1. (생략)
-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 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u>경우 제외한</u> <u>다.</u>)
- 3. ~ 6. (생략)
-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지 권리보호요청은 <u>7일(첫날은</u> 산 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 하지 <u>아니한다.</u>) 이내에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u>조사 개시 3일(공휴일·토요</u>
<u>일은 제외한다) 전</u>
제26조(요청 대상) ① (현행과 같
<del>음</del> )
2
 1. (현행과 같음)
2
۵.
경우는 제외
<u> </u>
3. ~ 6. (현행과 같음)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요청을 받는 날
———— 부터 7일
 <u>아니한다</u>

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 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 일로 한다.

-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 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 석하여 세무부서에 <u>법령개정</u>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 제33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3. <u>「지방세징수법」제25조</u>에 따른 납세자의 <u>징수유예 등</u>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신 설>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생 략)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 제35조(기한의 연장 결정) ----

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기한의 연장 <u>신청인</u>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36조<u>(가산세의 감면신청)</u> (생략)
-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 자보호관은 <u>세무부서</u>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 을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 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징수유예 또는「지방세징수 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 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 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 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u>.</u>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이
제36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현
행과 같음)
제37조(가산세의 감면 결정)
세무부서의
<u>.</u>
1.•2. (현행과 같음)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
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제105
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
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1. 징수유예 또는 <u>체납처분유예</u>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징수유예 또는 <u>체납처분유예</u>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신 설>

<u>제40조</u> (생 략)

1 <u>체납처분 유예</u>
2 <u>체납처분 유예</u>
제40조(이의신청 사전 의견제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이의신
청 청구건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
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u>제41조</u> (현행 제40조와 같음)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77조(납세자권리보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 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 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u> 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업무"란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려 조례로 전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 를 받아야 하는 경우
  -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 제69조(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 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 용될 수 없다.

-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 ·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 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 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 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④ 삭제 <1996. 3. 23.>
-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 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